



제 422회 국회 (임 시 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89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역주민에 대한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련 지원사항 신설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11. 29.

다. 회 부 일 : 2024. 12.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 기준을 갖춘 경우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기피문화로 인해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장묘시설 설치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 완화 규정을 두어 공설 장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71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지역주민에 대한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련 지원사항 신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을 지원하거나,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다른 지역의 주민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련 지원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① ~ ③ (생략) <u><신설></u>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u> <u>⑤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u>
<u><신설></u>	

현행 법령상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처리법」 제2조의 폐기물에 해당하지만,¹⁾ 우리 사회에서 점차 반려동물 양육 문화가 성숙함에 따라 죽은 반려동물을 기억하고 추모하고자 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바,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화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후 봉안할 수 있도록, 동물장묘업을 규정하여 허가제를 운영하는 한편,²⁾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례를 규정하고 있음.³⁾

이에 따라 2024년 12월 기준 77개소의 동물장묘업체가 허가를 받아 운영중에 있는데, 특히 서울·대전·제주의 경우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동물장묘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허가영업의 세부 범위)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허가영업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사체의 보관, 안치,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는 시설

나. 동물화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라.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마.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동물의 유골 등을 안치·보관하는 시설

3) 「동물보호법」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및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별 동물장묘업 허가 현황 (2024년 12월 기준) 】

(단위: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허가	77	-	3	2	2	-	1	1	2	28	3	5	4	7	9	6	4	-
민간	76	-	3	2	2	-	1	1	2	28	3	5	4	7	9	5	4	-
공설	1	-	-	-	-	-	-	-	-	-	-	-	-	-	-	1	-	-

※ 주: 2024년 12월 기준 운영중인 공설동물장묘시설은 전북 임실군 '오수 펫 추모공원' 1개소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최근 3년간 동물장묘업 반려동물 사체 처리건수 】

(단위: 천마리)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체 처리건수	62	76	12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민간 동물장묘업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 제71조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운영 중인 공설동물장묘시설은 전북 임실군의 '오수 펫 추모공원'⁴⁾ 1개소 뿐이고, 조성 중에 있는 공설동물장묘시설도 경기 여주시의 '반려마루'⁵⁾ 1개소 뿐임.

이에 대하여, 사람의 화장장·납골당 등과 마찬가지로, 동물장묘시

4)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북 임실군 오수 펫 추모공원은 2021년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5)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기 여주시 반려마루 내 추모시설은 건설 후 내부정비 중에 있으며, 현재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지 않는 상황임

설 역시 기피시설로 인식될 수 있는바, 시설의 설치 수요가 존재하더라도 조성예정지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⁶⁾

이에 개정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위탁운영권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거나,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는 사용료·관리비 부과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 등의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입법의 의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사람의 장사(葬事)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과 개정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장사법」은 개정안과 유사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 자연장지에 대하여⁷⁾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달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6) 서울신문,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동물장묘시설은 태부족... 전국 곳곳서 법정공방”, 2024. 8. 19.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4/08/19/20240819500088?wlog_tag3=naver
뉴시스, “광주 동물 장묘시설 조례는 제정했는데...” 실현은 미지수, 2024. 7. 21.
https://www.news1.com/view/NISX20240721_0002819269

7) 다만, 「장사법」은 공설장례식장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둘째, 「장사법」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⁹⁾

개정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사법」에 비하여 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사항을 보다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¹⁰⁾

따라서, 개정안의 수용과 관련하여는 현재 전국에 단 1개소만이 설치·조성되어 운영 중인 공설동물장묘시설이 각지에 원활하게 설치·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장사법」에 비하여 강한 지역 주민 지원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안 제71조제5항에서 해당 지역주민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달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0) 다만, 「장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개정안과 유사하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의 규정이 존재함.

현행 제71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때 사용료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장묘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이 제한되고 있는바,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 시 지역주민 우선 위탁 및 사용료 감면 등은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24